

1. 제정이유

「개인정보보호법」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대통령령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, 경찰 공무원, 경찰청 소속 직원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경찰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 등 법령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, 고유식별정보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 소속 직원 등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
△민감정보(제23조) △고유식별정보(제24조) △주민등록번호(제24조의2)
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임을 규정
(안 제1조)
- 나. 경찰공무원과 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민감정보
등을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 (안 제2조)
- 다. 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이 법에 규정한
경찰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민감정보 등을 처리하기 위한 근거
를 규정 (안 제3조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기관 의견조회 전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영은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 소속 직원 등이 법령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,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경찰공무원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)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 소속 직원은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,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,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「형사소송법」에 따른 범인·범죄사실 및 그 증거에 대한 수사
2. 「주민등록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관리, 검색·대조, 보존·폐기 등에 관한 업무
3.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작성·관리, 검색·회보, 삭제, 보존·폐기 등에 관한 업무
4. 「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,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신청,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·관리 및 검색·회보와 삭

제,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보호에 관한 업무

5.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 작성·유지·변경·보관, 임용에 필요한 자격 및 요건의 확인, 그 밖의 시험과 임용 등 인사사무의 처리를 위한 업무

6. 경찰 내부 정보시스템 등 정보통신망 운영·관리에 관한 업무

7. 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경찰관의 업무

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

제3조(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) 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,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,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범죄분석과	
연 락 처	(02) 3150 - 0532